

영위하는 조합을 제외한다)으로 한다.

③분할연합회 및 그 회원인 조합의 영위업종은 분할업종으로 하며, 분할연합회의 회원은 분할업종을 영위하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으로 한다.

④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은 연합회의 분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유효기간)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◇중소기업협등조합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복수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협등조합연합회에 대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당해 협등조합연합회 회원인 조합의 전체 조합원중 분할하고자 하는 일부업종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협등조합연합회의 업종별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노무현 인

2004년 1월 20일

국무총리 고건

국무위원
산업자원부 이희범
장관

◎法律 第7091號

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

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⑦이 법에서 “전략적 제휴”라 함은 벤처기업이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·시설·정보·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(이하 “기금관리주체”라 한다)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당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

: 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·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제4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자금관리주체

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제지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세제지원대상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주식회사인 벤처기업(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한국증 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을 제외한다. 이하 이 조·제15조 내지 제 15조의8 및 제16조의3에서 같다)과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주 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이 제15조 또는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

2.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

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(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. 이하 같 다)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.

제15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주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

제15조제5항중 “다른 벤처기업”을 “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다 른 벤처기업”으로 하고,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에 따라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15조의3제1항 및 제3항중 “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과”를 각각 “다 른 주식회사와”로 한다.

제15조의3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합병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 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벤처기업의 주주는 상법 제522조의3의 규정 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전에 벤처기업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 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.

⑤벤처기업이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 제 374조의2제2항 및 제5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에 관한 주 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.

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

제374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동법 제374조의2제4항중 “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”은 “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”로 본다.

제15조의4 내지 제15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4(신주발행에 의한 주식교환 등) ①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당해 벤처기업의 주주가 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.

1. 전략적제휴의 내용
2. 교환할 신주의 가액·총액·평가·종류·수량 및 배정에 관한 사항
3. 주식교환을 할 날
4.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주의 성명,

주민등록번호,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

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을 통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벤처기업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그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때에는 상법 제4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인이 조사를 한 것으로 보거나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상법 제4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④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
제15조의5(신주발행 주식교환시 주식매수청구권) 제15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제15조의6(주식교환의 특례) ①벤처기업이 제15조 또는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에 제15조제3항 또는 제15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주

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.

③벤처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벤처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이 조에 의한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.

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제15조의2 또는 제15조의5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15조의7(주식교환무효의 소) 상법 제360조의14의 규정은 제15조 또는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무효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상법 제360조의14제2항중 “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”는 “벤처기업”으로 보고, 동조제3항중 “완전모회사가 된 회사”는 “벤처기업”으로, “완전자회사가 된 회사”는 “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”으로 본다.

제15조의8(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) ①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(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

상장법인과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을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영업양도·양수계약서에 다른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고자 하는 다른 주식회사는 영업양도·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영업양도·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수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양수를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이 조에 의한 영업양수를 할 수 없다.

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18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8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“도시계획법 제53조제1항”을 각각 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및 제2항중 “도시계획법 제53조제1항”을 각각 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”으로 하고, 동조제2항중 “도시계획법 제32조”를 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”로 하며, 동조제3항중 “도시계획법 제53조”를 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”로 한다. 제2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중 “제15조”를 각각 “제15조·제15조의4”로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주식교환, 합병 및 영업양도·양수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 및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식교환, 합병 및 영업양도·양수에 관한 계약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◇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이유

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, 벤처기업이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

아니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로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,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간에 합병과 영업양도·양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.

◇주요내용

- 가. 종전에는 벤처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주식교환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다른 벤처기업에 한정되었으나 그 대상에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를 추가하고, 신주를 발행하여 주식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함(법 제15조 및 제15조의4 신설).
- 나.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간에 합병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벤처기업의 주주는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전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도록 함(법 제15조의3제4항 신설).
- 다. 벤처기업이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식교환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사회로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,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도록

함(법 제15조의6 신설).

라.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경우, 그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(법 제15조의8 신설)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노무현 ㉠

2004년 1월20일

국무총리 고 건

국무위원
산업자원부 이희범
장 관

◎法律 第7092號

産業發展法中改正法律

産業發展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지역진흥사업의 시행)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

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진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)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하여 기업간 위탁계약에 의한 생산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생산전문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2조의 제목중 “開發促進”을 “개발촉진 등”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정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,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, 교육훈련기관, 연구기관, 노동조합 등으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1.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수요에 관한 분석
2. 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의 개발 및 제안
3.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

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